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함은 법 제2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"를 "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"을 "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: 시행령 제20조제1항제 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

나. 「자본시장법」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: 「자본시장법」제3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경영지 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것

제9조의 제목 중 "종류"를 "종류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마목"을 "사목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의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제8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.

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 운용방법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8조(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제8조(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) 시행령 제25조제1항 금융기관) -----제1호의 "신용등급 등에 관하 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"이라 함 은 법 제26조 각 호의 1에 해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 <신 설> 가.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: 시행 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 건을 충족할 것 나. 「자본시장법」 제324조제 <신 설> 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 권금융회사: 「자본시장 법 제3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자기 자본비율을 충족할 것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	제9조(증권 및 기타 적립금의 운
방법의 <u>종류</u>) ① (생 략)	용방법의 <u>종류 등</u>) ①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
	목의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
	시하는 기준"이란 제8조제1호
	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.
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<u>마</u>	③사
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	목의
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	제12조(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
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)	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~6. (생 략)	1.~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
	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
	은 사전지정운용방법